

정 관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정 관

	제정	2002. 1.15.
개정	2003. 4. 4.	2004. 3. 2.
	2005. 3.17.	2005. 6.21.
	2006. 4.14.	2006.10. 2.
	2007. 4. 9.	2007. 5. 4.
	2008. 1.25.	2008. 3.12.
	2008. 6.19.	2008.11. 3.
	2009. 4.21.	2010. 6. 1.
	2012.11.21.	2015. 1.21.
	2015. 2.26.	2016. 3. 7.
	2017. 3. 6.	2018. 3. 5.
	2019. 3. 6.	2020. 2.28.
	2021. 2.26.	2022. 3. 4.
	2023. 2.22.	2024. 3. 4.
	2024. 6.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연초경작자 및 연초경작자단체(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를 지원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 등)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과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초경작과 관련한 영농기술개발 지원사업
2. 잎담배 품질향상을 위한 지력증진 지원사업
3. 연초경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4. 연초경작자단체 유급임직원의 인건비 지원
5. 기타 연초생산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6.19.)

제5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재원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재원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담배제조업자가 당해연도에 출연한 재산을 사용한다.(개정 2005.3.17., 2010.6.1., 2012.11.21., 2015.2.26.) 다만, 기연도 잔여 재산운용수익과 당해연도의 재산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사용된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말까지 충당되어야 한다.(개정 2006.4.14.)

② 제1항의 기타의 수입 중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제6조(광고) 재단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내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임직원

제7조(임원의 정수) ① 재단에는 이사 9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6.21., 개정 2008.1.25.)

②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08.11.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신설 2008.11.3.)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제2항의 당연직이사가 협의하여 제3항의 선임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11.3.)

②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재단의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2.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SCM본부장(개정 2003.4.4., 2024.6.5.)

3.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개정 2004.3.2., 2007.5.4., 2008.6.19.)

③ 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담배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 2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신설 2005.6.21., 개정 2008.6.19.)

④ 제3항 각 호의 각 1인은 학계·재계·연구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1.)

⑤ 감사는 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협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08.11.3.)

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⑦ 임원을 임기 전에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3.)
다만, 이사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5.)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21.)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6.3.7.)

제11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구성원이 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및 이사 본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이 발견될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7. 매 사업연도별 감사업무 결과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②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3.7.)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14조(사무국 등) ① 재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0.6.1.)

② 정원 및 직원의 임면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내부규정에 의한다.(신설 2010.6.1.)

제14조의2(내부규정 등) ① 재단이 복무, 보수, 재무회계, 자산운용 및 성과급 지급규정에 관한 재단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6.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정변경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부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0.6.1.)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설치·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11.3.)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11.3.)

③ 이사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전사업연도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8.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출연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전 각 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연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심의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감사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6.3.7.)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개정 2009.4.21.)
2. 재단 설립 후 2007.12.31.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재산(개정 2009.4.21., 2015.2.26.)
3. 2015.1.1. 이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재산 중 제5조제1항에 의해 당해연도 목적사업수행에 사용한 재원 이외의 재산(신설 2015.2.26.)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개정 2015.2.26.)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이동(2015.2.26.)]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기본재산목록과 같다.(개정 2016.3.7., 2017.3.6., 2018.3.5., 2019.3.6., 2020.2.28., 2021.2.26., 2022.3.4., 2023.2.22., 2024.3.4)

제22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등) ①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및 기타의 방법으로 중요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4.21.)

②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연도말을 기준으로 “별표”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6.10.2., 2009.4.21., 2016.3.7.)

③ 재단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재단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의2(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재단은 자산운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운용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0.6.1.)

②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0.6.1.)

제2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 재단의 예산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내부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3., 2010.6.1.)

제27조(회계)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단의 회계는 재단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회계 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6.1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정변경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0.6.1.)

제28조의2(승인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6.1.)

1. 예산편성 및 결산
2. 사업계획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단의 설립목적 등 공익에 반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직원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0.6.1.)

제29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재단은 설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출연 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업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9., 2015.2.26.)
 ② 재단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9., 2016.3.7.)

제31조(보고) ① 재단이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9., 2016.3.7.)
 ② 설립자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을 재단에 이전하고 재단은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9., 2016.3.7.)

제32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재단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재단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사유 및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재단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9.)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이사회가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의사록 1부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4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 이 재단 설립당시의 임원 및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 사	신용식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번지 현대대우아파트 805동 1401호	당연직
이 사	민영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번지 담배인삼공사아파트 2동 201호	당연직
이 사	홍범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105번지 신동아아파트 407동 608호	당연직
이 사	노재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7번지 효성아파트 105동 504호	3년
이 사	최우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한양아파트 3동 906호	3년
이 사	이윤환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767번지	3년
이 사	송양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번지 담배인삼공사아파트 2동 101호	3년
감 사	박창수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32-5번지 서초한양아파트 1동 206호	2년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2.1.15.)

제2조(선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담배제조업자협회 등 제조업자들의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추천권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제조업자들의 단체에는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이 수위인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기간 만료 등으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아니한 제조업자가 선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는 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출연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조(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재단 설립등기 완료일 부터 2년 이내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는 무급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임이사 무급기간은 재단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임이사 무급기간 중의 재단의 업무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처리한다.

제4조(과실금 등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기금목표액 조성 완료 이전이라도 기금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경작자 및 경작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주된 사무소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이 가능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1-2번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내에 두며, 그 기간 중의 필요한 사무는 엽연초생산협동 조합중앙회 직원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립연도의 사업연도) 재단 설립연도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3.1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3.4.4.)
- ② (선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담배제조업자협회 등 제조업자들의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추천권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표이사 사장이 행한다.

부 칙(2004.2.13.)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4.3.2.)

부 칙(2005.2.18.)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5.3.17.)

부 칙(2005.4.19.)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5.6.21.)

부 칙(2006.4.4.)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6.4.14.)

부 칙(2006.8.17.)

- ①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6.10.2)
-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2.23.)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7.4.10.)

부 칙(2007.4.16.)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7.5.4.)

부 칙(2008.1.21.)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2008.1.25.)

부 칙(2008.2.22.)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8.3.12.)

부 칙(2008.5.30.)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8.6.19.)

부 칙(2008.10.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8.11.3.)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9.2.25.)

- ① (시행일)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09.4.21.)
-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98번지 에이스타워 제8층에 둔다.

부 칙(2010.4.2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0.6.1.)
-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3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2.11.21.)
- ② (선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담배제조업자협회 등 제조업자들의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추천권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표이사 사장이 행한다.

부 칙(2014.12.23.)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5.1.21.)

부 칙(2015.2.24.)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5.2.26.)

부 칙(2016.2.24.)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6.3.7.)

부 칙(2017.2.23.)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7.3.6.)

부 칙(2018.2.26.)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8.3.5.)

부 칙(2019.2.26.)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19.3.6.)

부 칙(2020.2.27.)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0.2.28.)

부 칙(2021.2.25.)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1.2.26.)

부 칙(2022.2.25.)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2.3.4.)

부 칙(2023.2.20.)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3.2.22.)

부 칙(2024.2.28.)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4.3.4.)

부 칙(2024. 6. 4.)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허가일 2024.6.5.)

(별표)

기본재산 목록

(2023년도 말)

종 류		평 가 액(원)	비 고
설립 시 출연한 재산		10,000,000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재산	2002년~2007년	410,000,000,000	
	2015년 이후	116,287,030,723	
기타재산		7,676,624,359	
계		533,973,655,082	